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9. 10.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7년 8월 2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7년 9월 5일)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송 요 출)

가. 제 안 이 유

○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육성 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시설 관리, 청소년 보호,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구청장은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제6조)

○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7조)

○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는 자로 함(안 제8조)

○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를 위하여 구·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

○ 구청장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

○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32조부터 제36조)

○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함(안 제37조부터 제45조)

○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46조부터 제52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향상, 청소년보호,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청소년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 등 청소년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청소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기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 활동과 복지향상 등 지원이며

○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위하여 동별 15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구·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는 청소년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근거 규정으로 구청장은 민간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구역을 표시하여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적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현재 우리구의 청소년 인구수는 2007년 6월 현재 7만 7,748명으로 남자 4만 534명, 여자 3만 7,214명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와 관련 본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되는 것임.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현재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15명에서 25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동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촉위원과 비 위촉위원과의 반목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동이 부진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안 제19조 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6호

제안년월일 : 2007. 9. 5
제 출 자 : 신흥식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 현재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15명에서 25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동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촉위원과 비 위촉위원과의 반목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동이 부진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9조 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9조 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③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으로 하되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20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제정)

의안 번호	86

제출연월일 : 2007.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 보호,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장 제4조 제6조)

○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제3장 제7조)

○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청소년관련국장 및 위촉직 위원중 호선하는 자로 함(제8조)

○ 구청장은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사항,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위하여 **동별 15인 이내로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제4장 제19조, 제25조)

○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할 수 있음(제5장 제26조 제29조 제31조)

○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6장 제32조 제33조)

○ 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 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구역을 표시하여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함(제7장 제37조 제42조 제44조)

○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야 함(제8장 제47조 제49조 제50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비예산사업
○ 입법예고 : 2007. 07. 05 ~ 2007. 07. 25
○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제정)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과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 등 청소년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구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기본법과 보호법 등 청소년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 육성정책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 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구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활동과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청소년단체, 구 직능단체, 관계기관(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 관련기관의 공무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13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와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으로 한다.

③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으로 하되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지도위원의 위·해촉) ①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경찰관서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은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와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등

제2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제24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청소년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제32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구 관할구역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모범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모범청소년해외견학대상자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자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대상자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4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구청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하고 발전·향상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하반기 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날 행사는 5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운영

제37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운영)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하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서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9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역내에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서, 교육청, 유해환경감시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45조(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신고대상) 제4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2의 부과기준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7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9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제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50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4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제24조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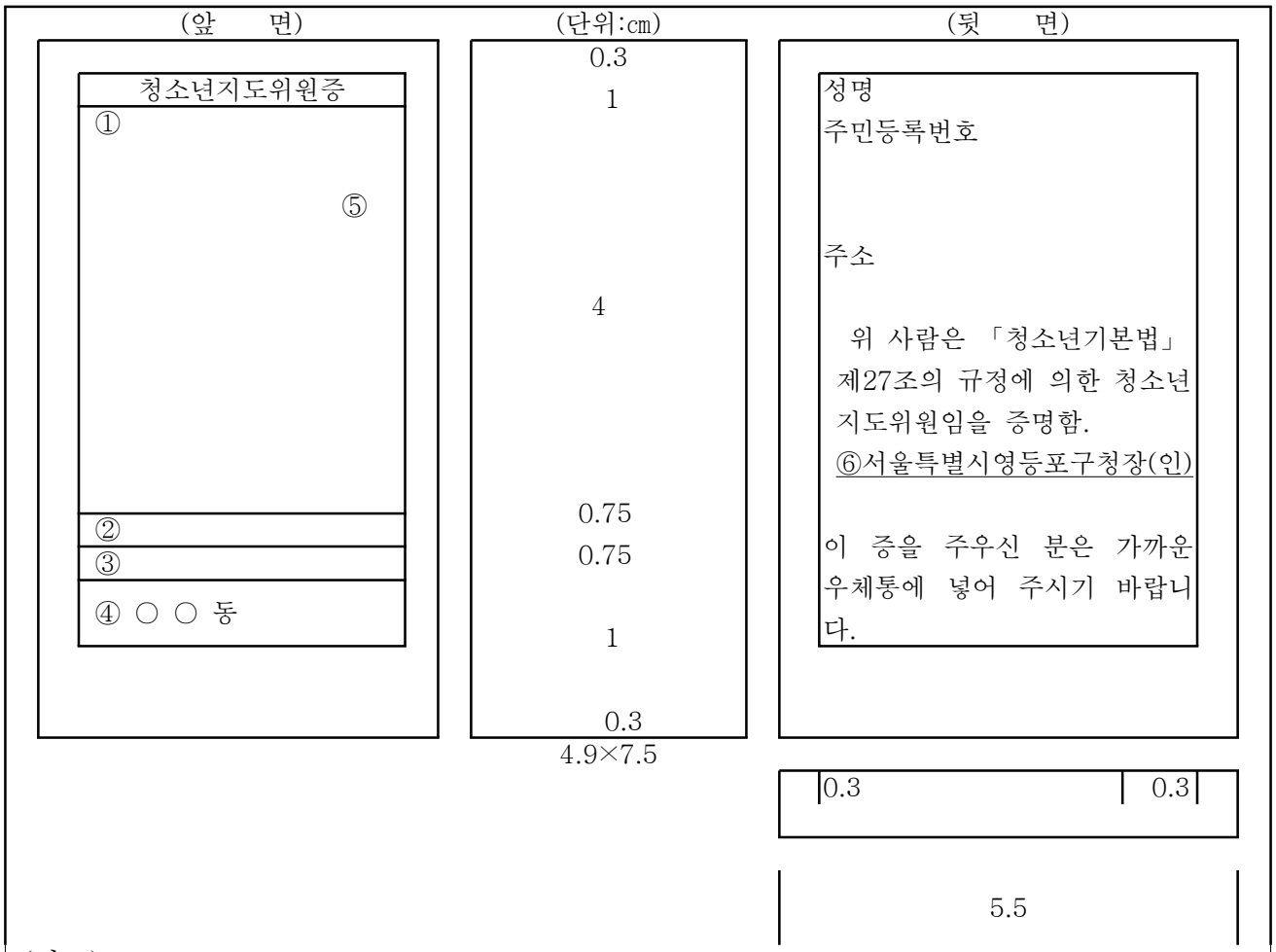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별표 2]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46조와 관련)

위 반 행 위	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위 반 행 위	지급액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제47조 제2항과 관련)

연번	신고인			신고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위반 행위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포상금 신청서(제50조 제1항과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 좌 번 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